#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94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김선교·박수민·박준태

이인선 • 이헌승 • 서일준

구자근 · 김상훈 · 박충권

윤상현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농업용 시설 및 주택개량 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몰기한이 2024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농촌지역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귀농인들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조세감면을 통해 농촌인력 수급여건을 개선시 키고, 낙후된 주거문화 향상은 농업생산력 증가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 활성화에 따른 농외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또한 농가의 고령화 및 고령농가의 저소득 문제로 농업인의 노후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70세 이상이 소유한 농지는 전체 농가가보유한 농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재산세 부담이 과중되고

있음.

이에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 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6조제4항).
- 나.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 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 장함(안 제16조제1항).
- 다.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 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35조의2).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 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 한 감면) ① ~ ③ (생 략) 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4)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 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 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 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 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 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 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법」 등 관계 법령 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 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포함한 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

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 1. ~ 3. (생략)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 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 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 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 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 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 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 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

<u> </u>
,
<u>.</u>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 2027년 12월 31일---

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서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까지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1. ~ 2. (생 략)
- ② (생 략)
-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 저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따라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 1. ~ 2. (생략)

<u>2027년 12월 31일</u>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
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u>2027년 12월 3</u>
10]
<u>1일</u>